

**◆ D-4 현장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**

**근로계약서(일용직)**

(갑) 사용자	상 호		대 표 자	
	주 소			
(을) 근로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	전화번호	
"갑"과 "을"은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 - 아 래 -				
근로장소		직 종		
계약기간	계약기간은 _____ ~ _____ 까지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동절기 공사중단, 발주처의 공사중단·설계변경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와 해당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. 이 경우 해당공종이란 계약기간 만료일 전 후에 "을"이 담당하던 공종을 의미한다.			
임 금	① "을"의 임금 시간당 _____ 원으로 한다. ② 임금은 매월 _____ 일에 지급하되 근로소득세, 고용보험료등을 원천징수한후 지급한다. 단, 본인이 원할 경우 "을"의 온라인구좌로 지급한다. ③ "을"이 전주(월~토)에 만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으로, 그리고 전월(1일~말일)에 만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차휴가수당(시간급 x 8)을 지급한다. ④ 연장근로, 야간근로(22:00~06:00), 휴일근로(일요일)시에는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지급한다. ⑤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일 당임 임금, 당해주의 주휴수당, 당해월의 월차수당이 발생되지 아니한다.			
근로시간	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 44시간, 1주일 12시간 연장근로 범위내에서 현장소장이 별도로 정한다.	휴게시간	08:40~09:00, 12:00~13:00, 13:50~16:00	
근로계약의 해지사유	① 무단결근 계속 5일 이상, 월 합계가 10일 이상인 경우,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징계절차없이 자동면직 한다. ② 안전수칙 불이행·취업규칙 불이행으로 경고 및 시말서 처분을 받고도 3회이상 받은 경우 ③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·중대한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④ 신체(고혈압, 디스크포함)·정신상장애로 계속근로가 불가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⑤ "갑"의 동의없이 타 작업장에 취업한 때 ⑥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및 "을"이 퇴직을 원할 때 ⑦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절차에 의거 해고되었을 때			
채용결격사유	불법체류자, 지명수배중에 있는자, 장애인등에 의거 노동력의 일부분이 상실되었음을 인정 받은자, 타건설현장에서 난동 및 현장업무를 방해하여 물의를 빚었던 사실이 있었던 자는 채용될 수 없으며, 위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본 근로계약은 취소된다.			
기타근로조건	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일용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른다.			
200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	
( 사 용 자 )			( 근 로 자 )	
<b>현장소장</b>	(인)	성 명 :	(인)	
		주민등록번호 :		

## 근로계약서(일용직)

(갑) 사용자	상 호		대 표 자	
	주 소			
(을) 근로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		전화번호
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 - 아 래 -				
근로장소			직 종	
계약기간	계약기간은 _____까지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동절기 공사중단, 발주처의 공사중단·설계변경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와 해당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. 이 경우 해당공종이란 계약기간 만료일 전 후에 "을"이 담당하던 공종을 의미한다.			
임 금	① "을"의 월임금은 일급액( _____ 원) x 출역일수방식으로 산정되며, 위 월임금에는 ①기본근로(1일 8시간, 월191시간)해당분 54%, ②연장근로(1일 2시간, 월 69시간)해당분 30%, ③유급휴수당(주8시간, 월 35시간)해당분 10%, ④년·월차수당(월12시간)해당분 3% ⑤ 휴일근로가산수당(주4시간, 월 12시간) 해당분 3%로 구성되어 있다. ② 임금은 매월 _____일에 지급하되,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등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. 단, 본인의 원할 경우에는 "을"의 온라인구좌로 지급한다.			
근로시간	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 44시간으로,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범위내에서 현장소장이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.	휴게시간	08:30~09:00 12:00~13:00 15:30~16:00	
채 용 결 격 사 유	불법체류자, 지명수배중에 있는자, 장해판정등에 의거 노동력의 일부분이 상실되었음을 인정 받은자, 타건설현장에서 난동 및 현장업무를 방해하여 물의를 빚었던 사실이 있었던 자는 채용될 수 없으며, 위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본 근로계약은 취소된다.			
근로계약의 해지 사유	① 무단결근 계속 5일 이상, 월 합계가 7일 이상인 경우,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징계 절차없이 자동면직 한다. ② 안전수칙 불이행·취업규칙 불이행으로 경고 및 시말서 처분을 받고도 3회이상 받은 경우 ③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·중대한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④ 신체(고혈압, 디스크포함)·정신장애로 계속근로가 불가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⑤ "갑"의 동의없이 타 작업장에 취업한 때 ⑥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및 "을"이 퇴직을 원할 때			
기타근로 조건	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, 일용직 취업규칙에 따른다.			
200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	
( 사 용 자 )		( 근 로 자 )		
대표이사	(인)	성 명 :	(인)	
		주민등록번호 :		